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72

발의연월일: 2022. 11. 3.

발 의 자:오영환·김경만·김병기

박 정・송갑석・안호영

어기구 • 윤재갑 • 이개호

이병훈 · 이원욱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여국가에서 위임받은 체신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기에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및 주민세 면제 혜택 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지방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2 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별정우체국법」 제	특례) ①
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같	
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	
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	
지정인"이라 한다)이 별정우체	
국사업에 직접 사용(같은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하	
는 경우에도 피지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지방	2025년 12월 31일
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	
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	
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피지정인이 과세기준일 현 재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별정우체국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 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경우로 서 피승계인 명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 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 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2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별 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 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 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 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 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 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 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 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 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②
<u>2025</u>
년 12월 31일
0007-1 4001 0401
2025년 12월 31일
3 (현행과 같음)